보험

부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해·질병의 보상한도가 최저 USD 10,000 이상인 해외여행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후 그 증빙서류를 매 학기 대외교류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❑ 부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단체 보험

대외교류본부에서는 매 학기 방학 중 단체 보험가입을 실시하므로 단체보험 가입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가입 대상

- 신입생 및 재학생(수료후 연구생, 연구원은 개별 가입)

○ 보험료

- 매 학기 변동(2013년 2학기 기준 : 약 70,000원)

○ 보험료 납입 기간

- 매 학기 등록금 납입 기간과 동일
- 기숙사 입사자의 경우, 기숙사비 납입 기간과 동일

○ 보험료 납입 방법

- 학생지원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외국인 학생 보험료 납입 고지서도 함께 출력 후 은행에 납부

○ 보험 기간

- 매 학기 시작일 00:00 ~ 다음 학기 시작일 전일 24:00까지(6개월)
- 예시 : 2013. 9. 1.(일) 00:00 ~ 2014. 2. 28.(금) 24:00

○ 보험 보장 내역

보상 가입플랜	보상한도액 (KRW)
상해사망 및 후유장해	10,000,000
질병사망 및 80% 이상 고도후유장해	10,000,000
상해&질병 입원의료비	10,000,000
상해&질병 통원(외래)의료비	250,000
상해&질병 처방조제 의료비	50,000
여행 중 특별비용 담보	5,000,000

- 상해&질병 통원 (외래)의료비 중 일일 본인 부담금액 : 일반병원 -1만원, 2차병원/종합병원 -1만5천원, 종합전문요양기관 -2만원
- 상해&질병 처방조제의료비 중 일일 본인 부담금액 : 8천원

❑ 개별가입자 보험증권 제출 안내

○ 대상

- 학교 단체 보험이 아닌 개별 보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(한국 국가 보험) 가입자

○ 제출서류

- 보험 증서 복사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복사본

○ 제출일

- 매 학기 등록금 납입 기간과 동일
- 기숙사 입사자의 경우, 기숙사비 납입 기간과 동일

○ 제출방법

- services@pusan.ac.kr로 보험증권 사본(또는 스캔본) 과 아래 보고서 제출

학번	영문명	보험회사명	보상 금액	보험기간
		□ 보험사 :	상해 : 질병 :	
		□ 국민건강보험	N/A	*보험료 최종 납부 월일 :*

○ 유의사항

- 한국에서 발생한 상해·질병 사고에 대해 USD10,000이상 보상되는 보험 증권을 제출

❑ 국민건강보험

국민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, 진단, 치료, 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가족과 함께 체류 중인 외국인은 한 명의 가입으로 모든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○ 가입조건

-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,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

○ 체류자격

- F-2, F-4, D-1~9, E-1~5, E-7~8, F-1(한국인 배우자 및 아이)

○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

- 매달 납부
- 직장건강보험 : 급여×직장 건강보험률(보험료의 50%는 사업주가 부담)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
- 지역건강보험 :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×직장건강보험률
-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말의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(유학의

경우는 30% 할인)

- 입국일로부터 가입일까지의 보험료와 다음 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보험 가입 가능
- 유학, 취업, 결혼을 제외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가입 가능

○ **문의처 및 찾아가는 방법**

- 홈페이지
  - · http://www.nhic.or.kr
  - · http://www.nhic.or.kr/english
- 대표 문의 전화 : 1577-1000
- 부산 금정 지사
  - · 주소 : [우:609-801]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, 16층(구서동)
  - · FAX : 051-801-4271
  - · 버스로 가는 법 : 50, 148, 1002(직행)(두실, 행림요양병원정류소에서 하차)
  - · 신동아아파트 정류소 : 29, 49, 80, 131, 301
  - · 지하철로 가는 법 : 지하철 1호선 두실지하철역 1번 출구, 금정타워 빌딩 16층

❑ **민영보험**

○ **단기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수료후연구생 및 연구원은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**

○ **외국인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선정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.**

○ **가입 기간 및 보장 내역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**

❑ 학생의료공제회

학생이 등록금 납부 시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외부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본인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'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' 기준에 의하여 지급합니다. 외국인 학생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회원과 공제회비

- 회원은 공제회비를 납부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수료후연구생, 교환학생등은 제외)을 지칭합니다.
- 공제회비 : 학기당 3,000원(전 과정 공통)

○ 의료기관

- 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한의원, 치과병원, 치과의원 및 공제회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

○ 신청절차

- 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대학생활 > 학생의료공제회 > 급여신청 및 확인)
-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, 진료비영수증(진료비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)을 대학 본부동 2층 학생과 사무실로 제출

○ 공제회 급여 지급한도액

- 1급(사망)
  - · 공상으로 인한 사망 : 5,000,000원
  - · 기타 사망 : 3,000,000원
- 2급(공상) : 2,000,000원
- 3급(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) : 보험급여의 80%(600,000원 이내), 비보험급여의 50%(400,000원 이내)
- 4급(3급 이외의 입원) : 보험급여의 70%(400,000원 이내), 비보험급여의 40%(300,000원 이내)
- 5급(통원치료) : 보험급여의 60%(300,000원 이내), 비보험급여의 30%(200,000원 이내)

* 각 급 판단은 부산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

○ 지급제한

- 급여 청구액이 3,000원 미만일 때
- 동일질병에 대한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년1회를 초과할 때
- 회원의 공제회급여 지급회수가 학기 당 1회를 초과할 때
-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

-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
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정할 때
- 귀금속 보철 및 심미적 기능보철, 교정료, 치석제거

○ **신청기한 제한**

- 치료받은 학기 내에 신청,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.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(☎510-12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